



내집앞눈안치우면 “과태료 10만원”



이르면 올해부터 자기 집 앞에 내린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 '뚱수해 등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건축물의 소유·점유·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주변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 법안은 국회 재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재규(柳在珪·민주당)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국회에 제출돼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이 법안이 행자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점유·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구체적인 책임범위와 위반시 제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은 건물

주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설 및 제빙관리법' 제정을 지난해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자기 집 앞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범위가 불분명하고 자치단체가 일일이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힘든 데다 눈 치우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물주들의 반대가 예상돼 법이 확정되기까지는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동아일보]

환경부, 세녹스에 연료첨가제 표기 불가 통보

세녹스의 판매를 둘러싸고 정부와 제조사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제조사에 '연료첨가제'란 용어를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말도록 공식 경고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12월 3일 세녹스 제조회사인 (주)프리플라이트사 등에 보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연료첨가제 용어사용관련 주의사항 통보"란 제목의 경고공문을 통해 "프리플라이트사의 제품에 연료첨가제



라는 문구를 표시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8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는 첨가비용이 1% 미만으로 규정돼 세녹스는 첨가제가 아닌데도 지난 9월 자사 홈페이지와 광고전단 등에 연료첨가제라고 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언론 등을 통해 첨가제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종량제 봉투내 쓰레기 82%가 재활용 가능 자원

종량제 봉투에 담겨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82%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인 것으로 조사돼 쓰레기 분리수거제도가 걸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가 전국 소각장 매립장 주민감시 실천단, 마산창원 환경연합, 제주환경연합 등과 함께 지난 9월 25일부터 5일간 광명소각장, 창원매립장 등 전국 6개 소각·매립장에 반입되는 종량제봉투를 표본추출,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무분별한 반입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경기도 광명시 소각장과 전주시 광역매립장으로 5종 분리수거 대상품목 반입률이 각각 전체 평균인 43%보다 높은 45.2%와 75.5%에 달했다.

특히 전주시 광역매립장의 경우 군부대에서 반입된 폐기물에 형광등, 건전지 등 유해폐기물이 많았고 최근에는 인근 대학병원에서 감염성폐기물이 다량 반입돼 주민감시원들에게 적발되기도 했다.[중앙일보]

항공기 소음 피해 손배소 포기

대구경북 항공기소음피해대책주민연대는 2001년 3

월 21일 정부 등을 상대로 낸 '항공기 및 전투기 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기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포항·상주·예천지역 소음피해 주민 100명이 제기한 3억여원의 항공기 소음피해 손배소송에 대해 법원이 사실기관에 2억7천700여만원이 드는 피해영향조사를 하도록 해 사실상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은 항공기소음 피해영향조사를 환경청이나 정부의 환경관련 기관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기관을 통해 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라며 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주민연대는 그동안 추진한 소음피해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에 전투기 소음피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기로 했다.[영남일보]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유치 첫 소송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했던 충북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 계획을 갑자기 철회한 충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각장 철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주민들이 소각장을 유치하기 위해 소송까지 낸 것은 처음이다.

재오개리 주민들은 지난 12월 17일 청주지법에 낸 소장에서 "충주시가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 설치 계획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불법"이라며 "시는 소각장 철회과정에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나 시의회에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밀실행정의 실체를 밝히고 파행정책에 희생된 재오개리 주민의 주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소송이 기각되면 주민감사 청구나 헌법소원

을 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지난 6월말 재오개리 주민들의 소각장 유치 신청에 따라 255억원을 들여 2008년까지 재오개리 일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기로 하고 주민들과 설치협약을 맺었으나 주변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심해지자 소각장 철회를 발표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별도의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 소각장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시민단체 "시화지구 개발案 줄속"

정부의 시화호 개발계획과 관련,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경기도 화성·시흥·안산 시민연대회의'는 지난 12월 15일 시화지구 개발계획안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 측에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시화지구 개발계획안은 과거 담수호 정책 실패의 과오를 답습하고,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시화호와 주변지역을 또 다시 파괴하는 졸속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도시, 골프장, 항만, 자동차 경기장 등 각종 건설 계획은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시화호 북측 간석지와 달리 남측 간석지는 자연천이가 활발히 일어나고 수려한 해안선과 자연수로 등이 고스란히 유지되는 시화호 유일의 자연공간"이라며 "이런 지역의 자연수로를 매립하고 해수면 전체에 방벽을 설치하겠다는 이번 계획안은 구태의연한 기존 개발 방식을 되풀이 하는데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무산 가능성

전국 최초로 강진에서 추진된 해상 생태계복원사업이 7개월째 표류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어민들에 따

르면 올해 3월 시작된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은 지난 5월 중단된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공사에 필요한 투기장(投棄場)을 만들 수 없게 돼 있는데다 투기장 예정부지인 칠량면 구로리 일대 5만여평에는 환경부 보호종인 대추귀고둥이 대량 서식하기 때문이다.

목포해양청은 "현재 개정작업중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통과가 늦어진데다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16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강진을 목리에서 칠량면 죽도 부근까지 12km 수로를 폭 30~50m, 2m 깊이로 준설하는 것으로, 이 해역은 탐진강 토사 퇴적으로 하상이 인근 농경지 보다 1~2m 가량 높아 집중호우시 인접 농경지가 침수되고 어패류가 폐사해 복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투기장을 만덕 간척지 등으로 옮길 것을 계속 요구하는 반면 투기장 변경시 추가 공사비가 드는데다 공기도 연장돼 해양청이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고 있다.

강진만 일대는 인근 6개 읍·면 천여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9곳에 달하는 어촌계가 이 복원사업에 동의했다.

목포해양청 관계자는 "2003년안에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1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할 형편"이라며 "대추귀고둥의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식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 만큼 환경단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무등일보]

친환경 제품 별개 다 있네

태엽감는 라디오 · 태양광 시계 · 에코생협 속속 출시

"건진지도 없이 그냥 돌리기만 하면 계속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갇혀도 쓸 수 있겠네."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부설 "에코 생활협



동조합”(www.ecocoop.or.kr)에 견학온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손전등의 태엽을 돌리며 신기해 한다. 에코생협은 친환경 공산품 브랜드 "에코라이프"를 출시, 건전지나 전력을 쓰지 않고 태엽을 감아 작동하는 라디오와 손전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 판매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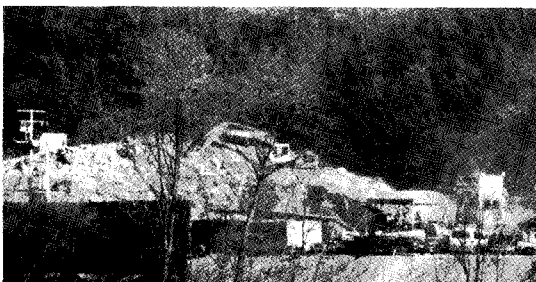
또 지난 11월 20일에는 시계업체 로만손에서 주문 생산한 태양광 손목시계도 출시했다. 이 시계는 반영구적이며, 3시간 충전에 6개월간 작동한다.

"에코라이프 라디오"는 태엽 방식으로 내장된 발전기에서 축전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전지가 필요없다. AM/FM 스테레오 전파수신이 가능한 이 라디오의 무게는 3백g, 1분동안 태엽을 감으면 40~50분간 사용할 수 있고, 완전 충전하면 8~10시간 쓸 수 있다. 태엽을 감아 충전하면 빛을 내는 "에코라이프 손전등"은 1분 충전하면 3~5분간, 완전 충전하면 4~6시간 쓸 수 있다.

이들 제품은 건전지 사용의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전력이나 배터리를 공급받기 어려운 비상시 및 여행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에코생협은 농약이나 첨가제 없는 안전한 먹을거리, 친환경 공산품을 개발 보급하여 소비양식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2년 10월부터 활동해 현 조합원은 7백56명이다. 일반인은 출자금 3만원을 내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중앙일보]

우기고 발뺌하는 천안시 환경행정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제출한 신규 시설물설치

에 따른 변경허가신고에 대해 현장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그대로 허가증을 발급한 무책임한 지자체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충남 천안시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따르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 S환경(천안시 원덕리)은 목재파쇄·톱밥제조기(DLK 800) 신규설치에 따른 변경허가증을 지난 2002년 10월 천안시로부터 발급 받았다.

하지만 확인결과, S환경은 설치하지도 않은 시설물을 신고했으며 천안시청 청소과 담당 공무원은 서류만 참고한 채 변경허가증을 내준 뒤 14개월이 지나도록 업체 방문을 통한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환경이 천안시청에 제출한 변경허가 신청서에서도 관련기기의 현장 설치사진 등이 첨부되지 않아 현장확인 절차가 요구됐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S환경은 현장에 설치되지 않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목재파쇄·톱밥제조기"가 기재된 변경허가증을 천안시로부터 신규로 발급 받은 것.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폐목을 재활용하는 용도의 "목재파쇄·톱밥제조기" 보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각종 가구 등의 재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의 부적정한 처리가 이뤄졌을 개연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천안시청 청소과 윤모씨는 (40, 7급)씨는 오히려 사실과 다른 법규정을 적용하는 등 순간적인 면피에 급급했다.

윤씨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신고한 시설물의 설치이전에 변경허가를 마친다"며 "변경허가를 득한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지자체에 사용개시 신고를 해오면 그때 가서 현장확인 절차를 밟게 된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처리시설 신규설치는 변경허가사항이지 설치신고나 사용개시신고를 받을 사항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일보]